

# 업 무 협 조

2020.3.5

수 신 : 각 부처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 담당자

발 신 :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

제 목 : 코로나19로 인한 ‘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유효성 판단’ 관련 업무협조

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
최근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정부지침에 따라 시민단체(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)가 대면 총회 및 이사회 등을 개최하지 못하거나 온라인 총회로 대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온라인 총회 개최와 서류 제출 기한 연장 등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[ 주요내용 ]

• **다자간 통화, 다자간 영상통화,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총회 진행 가능** (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, 민법상 비영리법인)

• **서류제출기간(비영리법인 2월, 공익법인 3월) 연장은 주무관청 결정사항**  
**(적극 검토요망)**

※ 첨부 : 비영리법인 등 총회 소집 관련 코로나 19 대책 (법무부)

문 의 :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이윤정 사무관

(010-3330-7908, yj123@mail.go.kr(온나라) / [yj123@korea.kr](mailto:yj123@korea.kr))